

파주시공공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

□ 개정이유

- 임진각 관광지내의 평화의 종을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조례시행상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, 보완하여 관광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입장료 징수 구분을 명확히 함(안 제2조)
- 나. 평화의 종 타종 사용료를 팀당 30,000원으로 정함.(안 제5조,별표 2)
- 다.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에 대한 요금을 면제함.(안 제6조)
- 라. 입장료 징수업무등 필요한 경우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임진각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종 타종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
 - 1) 평화의 종 타종 사용료의 경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생각 되며

- 2)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각종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도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상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됨.